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52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0.

발 의 자 : 김대식 · 김선교 · 김기현
김태규 · 이주영 · 김상훈
김승수 · 이달희 · 고동진
서지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한편, 국회의 의결을 통한 과세정보 제공 요구는 「국회법」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적법하게 감시하기 위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투명성 강화라는 공익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외 사유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회가 요구한 제출을 거부·제한하거나 지연하여 국회의 정책 감시 및 예산 심사 기능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

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81조의13제1항).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1조의13제1항제8호 중 “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”를 “국회의 본회의,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”로, “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”를 “비공개회의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비밀 유지에 관한 적용례) 제81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